

대전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1022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10220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가단1376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이즈

담당변호사 문현철

변론 종결 2022. 11. 9.

판결 선고 2022. 12. 14.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가단13765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5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2. 12. 14.까지 연 5%,

2022.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9. 10. 7. 접수 제621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0%, 피고 B가 8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와 항 소 취 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13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8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에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경부터 5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경부터 피고 B와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 B는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2017. 7. 20.	2,000만 원	2017. 9. 20.	3	2019. 2. 14.	1,000만 원	2019. 5. 14.
2	2017. 9. 20.	1,000만 원	2017. 11. 20.	4	2019. 6. 4.	4,000만 원1) 갑 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4. 피고 B에게 4,1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9. 7. 4.

[인정근거] 갑 1호증의 2~5, 2)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 B의 대여금 반환의무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의 내용인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위 4차례의 대여금 이외에 2017. 7. 20.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0.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갑 1호증의 1(차용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들은 원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호의로 받은 돈이지 대여금이 아니고, 차용증은 원고가 강요하여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 피고 B는 2018. 3. 20.부터 전체 구좌 21개인 2,000만 원, 계불입금 100만 원(계금 수령 후 120만 원)인 E계를 조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E계'라 한다), 1회차 옛날에는 계주인 피고 B가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고, 2회차 옛날에는 계원 F이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다음부터는 계금이 매월 20만 원씩 증액되었다. 계표는 별지 2와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E계에 원고 명의로 2구좌(19, 20번 구좌), 가족 명의로 3구좌(4, 13, 14번 구좌)를 가입하였는데, 3) 2019. 10. 20.에 19번 구좌 계금 2,360만 원, 2019. 11. 20.에 20번 구좌 계금 2,38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였고, 2019. 9. 20.까지 가족 명의로 가입한 3구좌를 포함하여 총 5구좌의 계불입금 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이 사건 E계는 파계되지 아니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갑 3, 4,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계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계금 합계 4,740만 원(20회차 계금 2,360만 원 + 21회차 계금 2,3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 B에게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해당 구좌에 대해서는 월 12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계속 월 100만 원(합계 500만 원)만 납입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 2019. 6.에는 피고 B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19. 10.과 2019. 11.에 피고 B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수령할 계금은 별지 3 내역 기재 미지급 계불입금 1,900만 원을 공제한 2,840만 원(= 4,740만 원 - 1,900만 원)이다. 피고 B는 원고가 납입할 계불입금 101,000,000원 중 원고가 계좌로 입금한 계불입금은 7,450만 원에 불과하여 미불입금이 2,65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2022. 6. 14.자 준비서면).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월 500만 원의 계불입금을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일부 차액(2018. 4. 20. 40만 원, 2018. 5. 21. 40만 원, 2018. 6. 20. 340만 원, 2018. 7. 25. 110만 원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계금 수령시 미납입 불입금을 공제한 일부 금액만 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2021. 3. 15.자 준비서면). 갑 3호증에 의하면, 피고 B는 4번, 13번, 14번 구좌의 계금 지급일에 계금 일부만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계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계불입금을 일부 미납하였을 경우 이를 계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계의 일반적인 운영방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계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미불입금은 정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위에서 인정한 미불입금을 넘어서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108,400,000원(= 대여금 80,000,000원 + 계금 28,400,000원)과 그중 1심이 인용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1. 29.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21.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이 추가로 인용한 5,84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1. 29.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22.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B는 2019. 10. 4. 아들인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C에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9. 10. 7. 접수 제62148호로 2019. 10. 4.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원고는 피고 B가 계주인 이 사건 E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고, 2019. 10. 20.과 2019. 11. 20.에 피고 B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비록 계금수령일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라 하더라도, 이미 원고가 피고 B에게 오랜 기간 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곧 계금을 수령할 수 있으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계금 채권이 인정되므로, 이 또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피고 B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증여함으로써 아래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적극재산은 136,150,000원이 되었고, 소극재산은 162,278,108원이 되었는바, 피고 B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적극재산]

세종특별자치시 G 대 175m ²	129,150,0004) 위 토지에 설정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128,400,000원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계산의 편의상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시가 감정(2019. 10. 4. 기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7,000,0005) 계산의 편의상 피고 B의 주장에 따라 인정한다.	을4-1,2
소계	136,150,000	

[소극재산]

원고에 대한 채무	108,400,000	
-----------	-------------	--

원고에 대한 채무	108,400,000	
H조합 대출금채무	19,727,980	2022. 6. 27. 회신
I은행 대출금채무	9,000,000	2021. 3. 31. 회신
J대출금채무	5,449,956	2022. 6. 29. 회신
K 대출금채무	2,700,172	2022. 7. 8. 회신
L에 대한 채무	17,000,000(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5,000만 원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피고 B의 주장대로 17,000,000원으로 보아 계산하였다.	을3
소계	162,278,108(7)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채무 68,885,949원(2022. 8. 29. 회신)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에 빠짐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이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위 인용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위 추가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다.

재판장판사김선용

판사최리지

판사강병하

별지

- 1) 갑 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4. 피고 B에게 4,1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피고 B는 갑 1호증의 2, 3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당심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3) 원고는 가족 명의 구좌에 대하여, 소장에서 12, 13, 14번 구좌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제출한 2021. 3. 15. 준비서면과 2022. 10. 11.자 준비서면에서는 4, 13, 14번 구좌에 가입하였음을 전제로 계금 수령 후 미납한 20만 원(계금 수령 후 120만 원을 납입하여야 하나, 원고는 100만 원만 납입하여 발생한 차액)을 계산하였다. 갑 3호증(금융거래내역)에서 보더라도 원고가 3번 구좌 계금을 수령(2018. 7.)하였고, 2019. 3.에는 오히려 계불입금 500만 원을 납입한 점(계금 수령일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다)에 비추어 4번 구좌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미납입 계불입금 산정에서 12번이 아니라 4번 구좌에 가입한 것에 원고에 불리하기도 하다.
- 4) 위 토지에 설정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128,400,000원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계산의 편의상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 5) 계산의 편의상 피고 B의 주장에 따라 인정한다.
- 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5,000만 원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피고 B의 주장대로 17,000,000원으로 보아 계산하였다.
- 7)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채무 68,885,949원(2022. 8. 29. 회신)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